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및 조합 정관 제41조 제1항, 임원선거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27대 이사장선거일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 공고일 : 2021년 1월 14일(목)
2. 선거 일자 : 2021년 2월 3일(수)
3. 선거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4. 후보자 자격 : 조합원 업체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정관 제4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선거권자 :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중인 조합원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
6. 선거 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6조에 의한 방법
7. 선거운동기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증을 교부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8. 후보자 등록
  - 가. 등록기간 : 2021년 1월 14일(목) 09:00부터 2021년 1월 20일(수) 18:00까지  
(매일(공휴일 불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나. 등록처 : 본 조합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34)
  - 다. 등록서류 : 별지(서류목록 및 양식)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6-3670 팩스 02-336-3604)

2021년 1월 14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홍



## # 별지

### ◎ 후보자 등록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부수 (매)	비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3	이력서	1부	
4	소속업체의 후보자추천 이사회 의결서	1부	법인의 조합원일 경우
5	소속업체의 등기부 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6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7	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 내 촬영)	2매	
8	서약서 (자필서명)	1부	별지 제3호
9	선거공보 원고(디스켓포함)	1부	별지 제4호
10	선거사무 대리인 위임장	1부	별지 제5호
1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1개월 이내
1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 주) 1. 후보자 추천 이사회 의결서는 후보자 추천결의가 된 의사록에 의장과 지명이사 2인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함.
2. 후보자 추천서는 20명이상 30명이하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쌍방의 추천서분은 무효로 함.**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추천서는 밀봉서류 안에 재밀봉>
3. 등록서류 중 1,2,8,10의 양식은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는 각 후보자가 별도로 정하여 제출함.

### ◎ 후보자 예치금 : ₩3,000,000원 (후보 등록시 예치)

- 임원선거규정 제26조(선거비용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선거공보의 제작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균등 부담, 예납하고 선거종료 후 정산처리.
- 예금주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 계좌번호 : 우체국 013722-01-000191

### ◎ 후보자 사퇴시

- 후보자 사퇴신고서 [별지 제6호]

### ◎ 불법선거운동사례 신고시

-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별지 제7호]

[별지 제1호]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업 체 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학 력 : [최종 학력만 기재]
6. 경 력 : [대표적 경력만 기재]

2021년 2월 3일 실시하는 제27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서류 :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소정양식)  
② 이력서 1통.  
③ 소속 업체의 후보자 추천 이사회결의서 1부.  
④ 소속 업체의 등기부등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3개월 내 촬영)  
⑦ 서약서 1부. (소정양식, 자필서명)  
⑧ 선거공보 원고(디스켓포함) 1부.  
⑨ 선거사무 대리인 위임장 1부.  
⑩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⑪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별지 제2호]

# KBIZ

## 후 보 자 추 천 서

피추천인 성 명 (한글)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업 체 명 :

상기인을 2021년 2월 3일 실시하는 제27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1 년 월 일

추천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 2월 3일 실시하는 제27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선거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본 서약서에 명기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제반 조치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나 조치사항을 수용한다.
3. 본인은 선거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거나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화합과 민주적 협동운동 조성에 적극 헌신한다.
5.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o. 어떠한 모임, 집회, 회의를 통하여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및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선동하는 행위
  - o. 행사목적을 이용하여 기념행사,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한 선거관련 자 또는 단체에게 기념품, 금품,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o.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o.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 장소(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에 모이게 하는 행위
  - o.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o. 특정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또는 행위(치적)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o. 초청장, 인사장 등에 본인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하는 행위
  - o. 선거와 관련 있는 자 또는 특정 단체의 체육대회 기타 각종 행사시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 o. 『처무규정 제12조(선거관여 제한)에 의거 조합 임직원은 특정인을 본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조합 임직원을 선거에 관여토록 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o. 기타 본인의 행위가 위 행위 등에 준 한다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6. 이상과 같이 각 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자격심사 결과 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학력 및 경력)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선거결과에 대한 어떠한 행정상, 사법상(민, 형사상)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인

(서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27대 이사장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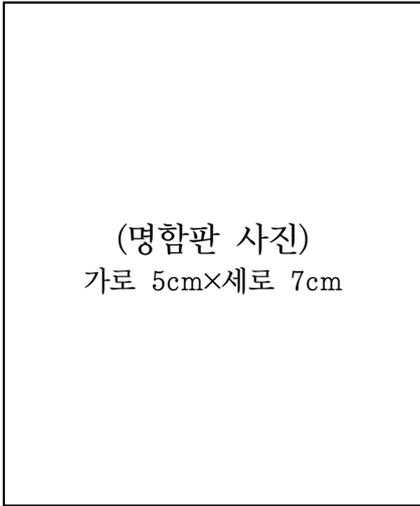
[ 2021년 2월 3일 시행 ]

## 선 거 공 보

- o. 선거일시 : 2021년 2월 3일 11:00
- o. 투표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여의도동)
- o. 지 참 물 :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명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기 호 :

홍 길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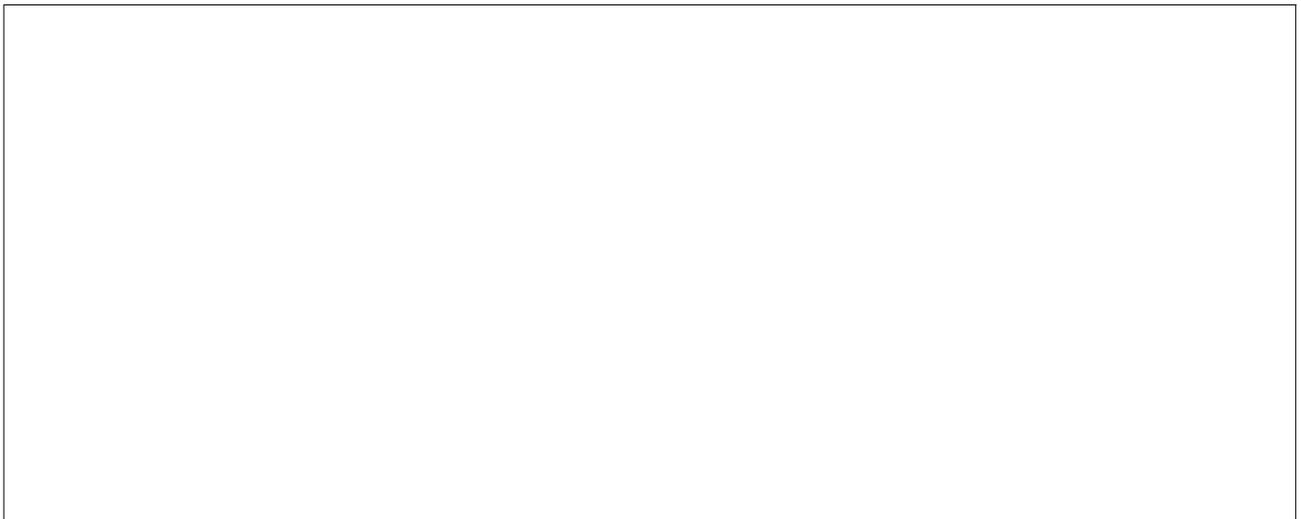
○○○○ 년 ○○ 월 ○○ 일생 (만 세)

◎ 주 소 :

◎ 학력 및 경력

- 
- 
- 

◎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소견



- 주)1. 선거공보의 규격은 너비 21cm, 길이 29.7cm로 하며, 단색(사진은 제외)으로 표지를 제외하고 양면 인쇄함.
- 2. 사진은 천연색 사진으로 함
- 3. 학력 및 경력은 10개 이내로 함
- 4.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소견은 3,000자 이내로 하며 글씨는 신명조체로 함
- 5. 선거공보의 제본은 좌철로 함
- 6. 상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바뀔 수 있음.



[별지 제6호]

## 후보자 사퇴 신고서

성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추천 조합원 :

접 수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1년 2월 3일 실시하는 제27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입후보를 사퇴합니다.

2021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별지 제7호]

##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소속)		
	(전화)		
신고일시	년 월 일	신고방법	①문서 ②전화 (접수자: )
신고내용 :			
유 첨 : 위반사실 입증서류 1부.			

상기내용을 신고함.

2021년 월 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상기 본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근거하여 제27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여 등록 심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 .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중

## [ 선거운동에 관하여 ]

- ◎ 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고,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이사장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았던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행위,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에 본 선거관리 위원들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후보자가 주관하는 공식 및 비공식 모임(행사)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 및 선거인들께서도 선거과열의 방지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와 관련된 아래의 행위 등은 절대 금지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모이는 행위
  - 상대방 후보를 비방 · 모략하는 행위
  - 금품의 제공 또는 수수행위 등
- ◎ 만일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전일까지 지속적으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공지사향 등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 끝으로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미와 불법선거운동사례 등에 관한 별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명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임원선거규정 시행세칙

### I 목 적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방송통신조합”라 한다)의 임원선거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선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세부운영 세칙

#### 1.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이하“위원회”라 함)

##### 가. 설 치

위원회는 선거일전 30일 (임원선거규정 제12조 제1항)에 설치하며 설치 장소는 방송통신조합 내 별도의 사무실로 한다.

##### 나. 구 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임원선거규정 제12조(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직무 및 업무처리

① 위원회의 직무는 임원선거규정 제13조(위원회의 직무)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라. 의 사 결 정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분의1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2. 선 거 공 고

##### 가. 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선거인에게 문서로 한다.(임원선거규정 제15조)

##### 나. 공고내용

공고의 내용에는 선거시기, 선거방법, 선거권자, 후보자의 자격, 후보자 등록서류, 등록기간, 등록처, 선거운동기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선거일 연기

천재지변 등 임원선거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선거일 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 3. 선거인 명부작성

#### 가. 명부작성

-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조합원을 관리하는 방송통신 조합 부서장이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명부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명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선거일 전일까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나. 명부내용

명부의 내용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 4. 후보자등록 및 기호결정

#### 가. 후보자 등록

- 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간으로 하며, 등록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2일간 연장한다.
- ② 후보자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후보자 추천서
  3. 이력서 1통
  4. 소속업체의 후보자추천 이사회 의결서
  5. 소속업체의 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등본
  7. 명함판사진 2매(최근 3개월 내 촬영)
  8. 서약서 1부
  9. 선거공보 원고
  10. 선거사무 대리인 위임장
  11. 사업자등록증명원
  1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③ 후보자 등록접수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등록시간은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공휴일 접수 불가)

④ 후보자 등록접수

1. 신청서류의 구비 여부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발급일자, 발급기관, 유효기간 등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2.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으면 후보자등록접수부[별표 제2호]에 기재하고 접수증[별표 제3호]을 발급한다.
3. 신청서 반려 : 등록서류가 미비 또는 불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서를 반려하며, 등록기간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토록 한다.

나. 후보자 등록심사

- ① 등록마감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집한다.
- ② 후보등록마감일 후보자 자격 등을 심사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에게 후보자 등록증[별표 제3호]을 교부한다.

다. 후보자 등록취소 등

- ① 후보자 사퇴 :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후보자 등록서류 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무효 : 후보자 자격이 없거나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되고 명백한 증거가 입증될 경우 후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한다.

라. 후보자 기호결정

- 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일 후보자등록 접수순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 본인이 추첨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후보자 등록서류 별지 제5호]을 제출한 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 ② 추첨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후보자 기호는 "1, 2, 3, 4. . . . ."로 한다.

마. 후보자 등록사실 등의 통보

후보자의 등록, 사퇴·사망,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선거인(후보자 포함)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5. 선거운동

### 가. 선거운동의 제한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친목도모 및 취미를 위한 소수의 인원(통상 4,5인 이내)의 모임 또는 조합에 공론화 되어 있는 모임에서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2. 조합의 사업 집행 및 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회의 또는 집회를 소집 또는 참석하거나 조합을 방문하는 행위
  - 3.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통상 4,5인 이내)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임 또는 회의, 집회에서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동·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나. 선거운동 방법

- ①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의 배포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중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선거공보의 배포로 한정한다.
- ② 인쇄물의 배포
  - 1. 인쇄물은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배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에 의한 배포는 할 수 없다.
  - 2. 인쇄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③ 합동연설회 개최
  - 1.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최장 30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 3.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은 소요예정액을 추정하여 후보자에게 예납토록 하고 사후 정산처리 한다.

## 다. 선거운동기간

-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②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라 함은 임원선거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등록증을 교부한 때를 말한다.

## 6. 위반사실 신고 및 조사

### 가.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 친목도모 및 취미를 위한 소수의 인원(통상 4,5인 이내)의 모임 또는 조합에 공론화 되어 있는 모임에서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위반사실 신고 및 조사

- ① 선거운동제한·금지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유기명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FAX 전송포함)로서 하거나,
- ② 본인이 직접 위원회의 내방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면담한 후 신고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①, ②와 같이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 다.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위반시 조치

- ①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신고된 사실을 조사·확인한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입증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 경고 1회
  2. 2회 위반 :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조합홈페이지 게재
  3. 3회 이상 위반 :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와 총회에 보고여부를 의결, 위반사실을 회원에 통지
- ② 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무효를 의결할 경우 후보자에게 의견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7. 선거공보작성

### 가. 선거공보 원고의 제출

- ① 제출기한은 후보 등록 마감일 18시까지로 하며,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공보 발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출내용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및 조합 경영에 관한 소견과 자기소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③ 후보자의 본회 경영에 관한 소견과 자기소개에 관한 원고의 분량은 3,000자 이내로 하며,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선거공보의 작성

- ① 공보의 작성 등에 대하여는 임원선거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선거공보의 작성은 별지 제4호의 양식으로 하며, 규격은 너비21cm, 길이 29.7cm로 단색(사진 제외)으로 인쇄한다.
- ③ 사진은 천연색 사진으로 규격은 명함용(가로 5cm×세로 7cm)으로 하며, 선거공보에 첨부할 수 있는 사진은 1매로 한다.

다.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공보의 발송은 각 선거인 1인당 1부씩으로 하며,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후보자 포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거공보 제작비용

선거공보 제작비용은 후보자가 균등분담하며, 위원회는 제작 추정액을 결정하여 후보자에게 예납토록 하고 사후정산 한다.

## 8. 선거실시

가. 투표소 설치

- ① 투표소 설비
  - 1. 선거·투표·개표관리자의 좌석
  -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 3. 투표함(봉함이 가능한 것)
  - 4. 기표소(기표에 필요한 도구 포함)
  - 5.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사항
- ② 투표소 설치는 임원선거규정 제27조 (투표소)의 규정에 의한다.

나. 투 표

투표는 임원선거규정 제32조(투표)의 규정에 의한다.

다. 개 표

개표는 임원선거규정 제33조(개표)의 규정에 의한다.

라. 유·무효투표의 판정

판정기준은 임원선거규정 제39조(유·무효투표의 판정)의 규정에 의한다.

마. 선거·투표·개표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를 선출하고,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② 각각의 관리자는 개표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선거록[임원선거규정 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질서유지 및 기록보존

- ① 질서유지 :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기록보존 : 선거·투표·개표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이사장의 재임기간 또는 선거에 관한 쟁송(靜訟)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까지 보관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해체

임원선거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의 선거사무종료 시기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에 따라 해체한다.

10. 기 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1호]

# 선 거 인 명 부

(        년        월        일 기준)

조합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서명	대리인	서명	비고

[별표 제2호]

후 보 자 등 록 접 수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접수일자	등록서류 심사결과
1					
2					
3					
4					
5					
6					
7					
8					
9					
10					

## 후 보 자 접 수 ( 등 록 ) 증

접수번호 : \_\_\_\_\_

### 접수(등록)증 (보관용)

성명(한글) : \_\_\_\_\_ (한자 : )

주 소 :

업 체 명 :

추천업체 : \_\_\_\_\_ 개사

위 사람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실시하는 제 \_\_\_\_\_ 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선거  
후보자로 접수(등록)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접수(등록)증 수령자 : \_\_\_\_\_ (서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접수번호 : \_\_\_\_\_

### 접수(등록)증 (교부용)

성명(한글) : \_\_\_\_\_ (한자 : )

주 소 :

업 체 명 :

추천업체 : \_\_\_\_\_ 개사

위 사람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실시하는 제 \_\_\_\_\_ 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선거  
후보자로 접수(등록)함.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접수(등록)증 수령자 : \_\_\_\_\_ (서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별지 제2호]\_임원선거규정

〇〇년 〇월 〇일 실시 \_\_\_\_\_선거

선 거 록

▣ 투표상황

1. 투표일시 : 20   년도   월   일   시   분 ~   시   분
2. 투표장소 :
3. 투표상황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기 권 자 수

4. 투표용지 사용내역

총투표용지매수	선거인에게 준 투표용지매수	남은투표용지매수

5. 참관인 명단

후 보 자	참 관 인	서명	후 보 자	참 관 인	서명

▣ 개표상황

1. 개표일시 : 20   년도   월   일   시   분 ~   시   분
2. 개표장소 :
3. 개표결과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비고
			1	2	3	4	계			

4. 당선자

구분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비고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 하였음.

20   년   월   일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